

이 양식을 통해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청을 제기하여 이혼, 사실혼 해소 또는 법적 별거에 대한 판결을 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 양식에는 귀하가 제기한 혼인관계 해소 또는 법적 별거에 대한 공동 신청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동 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 사실혼 해소 또는 법적 별거에 대한 판결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양식 [FL-107-INFO](#)를 참조하십시오.

## ① 사건 개시

1단계: 아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공동 신청서—혼인 또는 사실혼(양식 [FL-700](#)).
- 소환장—공동 신청(양식 [FL-710](#)).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 통일 자녀 양육권 관할 및 집행법(UCCJEA, 영어 약어로)에 의한 신고서(양식 [FL-105](#)).

양식 FL-700에는 일방 당사자가 신청인 1, 상대방이 신청인 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가 제출해야 하는 양식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재된 경우, 신청인 1은 자신을 “신청인”으로, 신청인 2는 자신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단계: 법원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접수란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려면 법원 서기에게 전화하여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온라인(전자 파일)으로 제출하려면, 지역 법원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원 또는 그 웹사이트를 찾으려면 [courts.ca.gov/find-my-court](http://courts.ca.gov/find-my-court)로 접속하세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모두 법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lfhelp.courts.ca.gov/fee-waiver](http://selfhelp.courts.ca.gov/fee-waiv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재산 정보 공개

공동 신청서 제출 후 60일 내에,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공개 자료를 작성하여 송달해야 합니다.

1단계: 아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재산 공개 신고서(양식 [FL-140](#)).
- 수입 지출 신고서(양식 [FL-150](#))(이 양식은 법원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 부채 명세서(양식 [FL-142](#)) 또는 재산 신고서(양식 [FL-160](#)).

2단계: 재산 관련 서류를 송달하십시오.

만 18세 이상인 사람(귀하는 제외)에게 1단계에서 작성한 양식의 사본과 지난 2년 간 귀하가 제출한 소득 신고서를 전달하여, 귀하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또는 이 사건에서 그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들의 변호사에게 이를 우편 송달하도록 하십시오. 양식 FL-150만 법원에 제출합니다. 1단계에 기재된 문서 중 이를 제외한 다른 문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3단계: 귀하의 재산 공개 자료를 송달하였음을 법원에 알리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공개 자료가 송달되었음을 고지하며, 각자 재산 공개 신고서 및 수입 지출 신고서의 송달 관련 신고서(양식 [FL-141](#))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합의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귀하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이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미 합의한 경우 4단계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개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lawyer 또는 attorney라고 함)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경우 법원 심리와 재판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협력적 변호사.**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변호사. 협력적 변호사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협력적 변호사는 어느 당사자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선택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변호사 또는 공인 카운슬러.

자세한 정보는 [selfhelp.courts.ca.gov/divorce/make-decisions/propose-negotiate-agreements](http://selfhelp.courts.ca.gov/divorce/make-decisions/propose-negotiate-agre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사건 종결

사건을 종결하려면 합의 내용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양식으로 작성하고 판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아래 문서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양 당사자가 서명한 출석, 합의서 및 포기서 (양식 [FL-130](#)).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서명한 궐석재판 또는 협의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 또는 법적 별거 신고서(양식 [FL-170](#)).
-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서명한 최종 재산 공개 신고에 관한 합의서 및 포기서(양식 [FL-144](#)). 최종 재산 공개 신고의

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②번에 제시된 단계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 판결(양식 [FL-180](#)) 초안과 서명된 서면 합의서.
- 귀하의 최신 연락처 정보 및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 판결 등록 통지서(양식 [FL-190](#)) 초안.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양육비에 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 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양식의 전체 목록은 [selfhelp.courts.ca.gov/divorce/finalize-divorce](http://selfhelp.courts.ca.gov/divorce/finalize-divor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마음이 바뀌어 합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공동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사 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공동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귀하의 사건이 기각(종결)되거나, 귀하의 일반 출석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이 다른 절차로 이관될 뿐이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귀하가 판사에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 1단계: 아래 2개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 신청서—혼인/사실혼(양식 [FL-100](#))(귀하가 신청인 1인 경우) 또는 답변서—혼인/사실혼(양식 [FL-120](#))(귀하가 신청인 2인 경우). 캡션에서 “수정본”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 공동 신청 철회 통지서(양식 [FL-720](#)).

- b. 2단계: 1단계에서 작성한 양식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해당 양식은 공동 신청과 동일한 사건으로(동일한 사건번호 사용) 제출하십시오.
- 수정된 신청서—혼인/사실혼(양식 [FL-100](#)) 또는 수정된 답변서—혼인인/사실혼(양식 [FL-120](#))는 다른 사건으로(다른 사건 번호로) 제출되며, 수정본 제출은 공동 신청서—혼인 또는 사실혼(양식 [FL-700](#))의 제출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 c. 3단계: 귀하가 2단계에서 제출한 양식을 사건 당사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귀하 제외)이 귀하의 서류 사본을 귀하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들의 변호사에게 우편 송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률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selfhelp.courts.ca.gov/court-basics/service](http://selfhelp.courts.ca.gov/court-basics/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 4단계: 귀하의 사건에서 수정된 신청서—혼인/사실혼(양식 [FL-100](#)) 또는 수정된 답변서—혼인인/사실혼(양식 [FL-120](#))를 제출하면, 공동 신청은 철회될 것입니다. 신청인 1은 귀하의 사건에서 신청인이 되고, 신청인 2는 귀하의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됩니다.

사건은 당사자들이 하나 이상의 쟁점에 합의하지 못한 사건처럼 진행될 것입니다(가족법 § 2330(b) 참조). 법원은 새로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환장—공동 신청(양식 [FL-710](#))에 기재된 모든 표준 임시 금지명령은 법원이 최종 판결을 확정하거나 귀하의 사건을 기각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공동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이 수정된 신청서—혼인/사실혼(양식 [FL-100](#)) 또는 수정된 답변서—혼인/사실혼(양식 [FL-120](#))를 적법하게 송달했다면, 귀하는 30일 내에 적절한 법원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된 신청서—혼인/사실혼(양식 [FL-100](#))(귀하가 신청인 1인 경우) 또는 답변서—혼인/사실혼(양식 [FL-120](#))(귀하가 신청인 2인 경우)를 제출하십시오.

### 중요한 질문

저는 언제 이혼하게 됩니까?

귀하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자는 귀하가 공동 신청서—혼인 또는 사실혼(양식 [FL-700](#))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법적 별거에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귀하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등록할 때까지 이혼 또는 법적 별거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사건에서 아직 판결이 제출되지 않았고, 귀하가 자녀 양육비, 양육권, 양육 시간(면접교섭),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비, 증거개시절차 또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우선 공동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 후 명령을 요청하는 명령 요청서(양식 [FL-300](#))를 제출하십시오. 법원 웹사이트([selfhelp.courts.ca.gov/request-for-order](http://selfhelp.courts.ca.gov/request-for-order))에 접속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제 연락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우편주소 또는 다른 연락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법원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소 또는 다른 연락처 정보 변경 통지서(양식 [MC-040](#))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송달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저나 다른 쪽 부모가 공적 부조(CalWORKS)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귀하 또는 다른 쪽 부모가 공적 부조(CalWORKS)를 받는 경우, 모든 양육비는 지역 아동 지원 기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역 아동 지원 기관의 대표자는 귀하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귀하의 판결 (양식 [FL-180](#)) 초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아동 지원 서비스 부서의 웹사이트([childsupport.ca.gov/find-my-local-agency](http://childsupport.ca.gov/find-my-local-agency))에서 지역 아동 지원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찾아 문의하십시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폭력은 신체적 학대일 수 있으나, 신체적 학대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학대는 언어적, 정신적, 감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거나 보호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부된 경우, 본 공동 신청 절차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사실혼 해소 또는 법적 별거를 위한 별개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혼 또는 법적 별거에 대한 법적 단계(양식 [FL-107-INF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혼 해소 또는 법적 별거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금지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식 [DV-500-INFO](#)(가정 폭력 금지명령이 도움이 될까요?).
- 양식 [DV-505-INFO](#)(가정 폭력 금지명령 신청 방법).
- [selfhelp.courts.ca.gov/DV-restraining-order](http://selfhelp.courts.ca.gov/DV-restraining-order).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전미 가정폭력 핫라인 800-799-7233, 또는 211(해당 지역에서 통화 가능한 경우)로 전화하십시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정보 시트는 공동 신청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법적 조언을 받기를 원하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의 가족법 지원 담당자 또는 셀프 헬프 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와 법원 양식을 제공받으시고 지역 법률서비스 제공자를 소개받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selfhelp.courts.ca.gov/court-based-self-help-services](http://selfhelp.courts.ca.gov/court-based-self-help-serv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 헬프 가이드([selfhelp.courts.ca.gov](http://selfhelp.courts.ca.gov))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calbar.ca.gov/LRS](http://calbar.ca.gov/LRS))에 게시된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866-442-2529(무료)로 전화하여 변호사를 선정하십시오.
- [lawhelpca.org](http://lawhelpca.org)에서 무료 및 저비용 법률 지원 서비스(자격이 되는 경우)를 찾아 보십시오.
- 지역 법률 도서관 또는 공공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 보십시오.